

의안번호

제98호

# 논산시 시세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8. 10. 15.				

#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8호

제출연월일: 2018. 10. 15. 제 출 자:는 산 시 장

####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 대행을 위한 선정 모집 공고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규정 및 공정한 선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안 제5조 ~ 제6조)
- 다.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 해제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마. 매각 예술품등의 인도, 매각 대금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 의 청구 절차 규정 (안 제9조 ~ 제12조)
- 바. 선정된 매각전문기관 취소 할 수 있는 범위 규정함 (안 제13조)
- 사. 매각 관련 협의 및 비밀유지, 배상책임 규정 (안 제14조 ~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필(규제대상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8. 8. 24. ~ 2018. 9. 14.(20일이상)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고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세정과(041-635-3631)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논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 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 능할 것
-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 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 ② 1차 심사는 시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 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 장으로 하고 참여예산실장, 청렴감사실장, 열린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

- 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에 따른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 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 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 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
입 아	세 무 과 장	진 용 면	<u>]</u>
자	징수팀장	김 종 현 (746-547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논산시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논산시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 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 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 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일 것
-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 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 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 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 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 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 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 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 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 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

<신 설>

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 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 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 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 한다.

- ② 1차 심사는 시 업무소관 부서 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 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 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 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 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예산실장, 청렴감사실장, 열린홍보실장, 자치

<신 설>

<신 설>

<u>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을</u>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 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 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 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신 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 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 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 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 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비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

<신 설>

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 여야 한다.

-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 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 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 조에 따른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 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한다.
-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 각한 경우
  -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 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

- <u>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u> 이 취소된 경우
-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 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 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 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 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 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
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
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
리할 수 있다.

-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 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 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 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로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

<신 설>

| 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 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 제17조 (현행 제4조와 같음)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이해당없음
-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 세무과장 진용민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매수하지 못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7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3.27.]

#### **수수료**(제52조의3관련)

####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7 H	3) 7 7 A))		수 수	최저
구 분	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료 율	수 수 료
가. 법 제85조제1항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또는 법 제95조제1		공매공고 후 매각	0.9%	18만원
항제1호에 따라 공		결정 전		
매가 중지되거나 매		매각결정 후 대금	1.2%	24만원
· 각결정을 취소한 경		납부 전		
우				
나. 매각대행 의뢰가	체납액 또는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해제된 경우	매각예정가격	공매공고 후 매각	0.9%	18만원
	중 적은 금액	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	1.2%	24만원
		납부 전		
다. 압류재산을 매각	해당 매각금액	_	3.0%	30만원
한 경우				
라. 법 제95조제1항제	해당 매수대금	_	1.2%	24만원
2호에 따라 매각결				
정을 취소한 경우				

#### 비고:

-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수 있다.

####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 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8. 3. 27.>

#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색상이 어 접수번호		= 2024	78411	접수일					처리기간				
		l명 인명)						생년월일  인등록번					
신청인		<sup>E</sup> 소 업소)											
	전호	<b>.</b> 번호					전	자우편주	· 소				
					매각대형	뱅 의뢰	물품	<u>z</u>					
구	분		<u>:</u>	품	명			보 관	장 소		비	ī	<u>_</u>
* 물품 거볔i	로 작성하	고 작성학	내용이 많	는 '은 경우	2 별지 작성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5	E는 인)
<b>논산시장</b> 귀하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설 2018. 3. 27.>

#### 논 산 시

수신 (경유)

####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

체 납 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고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여락하시면 친	절하게 상담	h해 드리겠습니다	<u>.</u> }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 참고 2 표준 시세 징수조례안

oo시·도(시·군·구) 조례 제00호

oo시·도(시·군·구)세 징수조례 개정안(기본안)

oo시·도(시·군·구)세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oo시·도(시·군·구)세(이하 "시·도(시·군·구) 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시행규칙)는 제19조로 한다.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000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 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 여 시·도(시·군·구)보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 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ooo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④ ooo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ooo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 ② 1차 심사는 시·도(시·군·구)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ooo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군·구) 국장(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 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ooo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000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000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000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ooo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ooo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 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ooo장은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② ooo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4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ooo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ooo장에게 청구할수 있다.
  -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 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ooo장의 직권 또는 전 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000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ooo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 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000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도

보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000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000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000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